



주시드니총영사관

KALA 호주한인변호사회

# 알기 쉬운 호주 생활 법률 안내

“호주 워홀러, 유학생, 한인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 사례집”



알기 쉬운 호주 생활 법률 안내



“호주 워홀러, 유학생, 한인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 사례집”

## 알기 쉬운 호주 생활 법률 안내

---

2016년 11월 제2판 인쇄

지은이 | 한인 법률 상담 서비스(호주한인변호사회)

발행처 |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연락처 | +61 2 9210 0200

전자우편 | [sydney@mofa.go.kr](mailto:sydney@mofa.go.kr)

홈페이지 | [aus-sydney.mofa.go.kr](http://aus-sydney.mofa.go.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reasydney](http://www.facebook.com/koreasydney)

---



“호주 워홀러, 유학생, 한인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 사례집”

## 발간사

시드니의 뜻있는 젊은 한인 법률가들이 호주 한인 위홀러와 유학생 그리고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회를 열어 온 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례들을 상담하였으며 호주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유용한 법률 정보를 모아 2013년 1차에 이어 2차 생활 법률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사례집은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숙지해야 할 법률 상식을 11개 주제별로 풀어나가면서 동포들에게 예방책과 대응책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매월 한인 법률 상담 서비스에서 봉사해 주신 호주 한인 변호사회 변호사와 법대 학생들, 장소 제공과 책자 발간 등을 지원한 주시드니총영사관 관계자, 그리고 책자





작업, 번역, 감수를 담당한 최단비 검사, 김희정 변호사, 유영서 변호사, 홍경일 변호사, 김현태 변호사, 권서진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동 안내서가 동포 여러분들의 호주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인 법률 상담 서비스 호주한인변호사회





## 발간사 \_ 04

### 사례 1. 벌금(Fines) \_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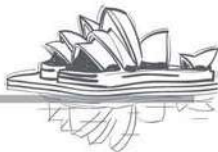
### 사례 2. 음주운전(Drink Driving) \_ 13

### 사례 3. 임금체불(Unpaid Wages) \_ 19

### 사례 4. 폭행(Assault) \_ 26



# CONTENTS



사례 5. 성폭행(Sexual Assault) \_ 30

사례 6.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_ 40

사례 7. 임대차 분쟁(Residential Tenancy Disputes) \_ 46

사례 8. 산업재해(Worker's Compensation) \_ 51

사례 9. 교통사고(Motor Vehicle Accident) \_ 56

사례 10. 중고차 구입(유의 사항) \_ 60

사례 11. 직업 알선 수수료 \_ 64





사례  
1

## 벌금(Fines)

### ■ 사안 개요

- 이 모 씨 부부는 캄시역에서 벨필드역까지 기차표 없이 무임승차 하였다가 적발되어 각자 \$200의 벌금을 부과 받음.
- 6개월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벨필드로 가던 길이었는데 평소에는 걸어가는 길이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기차를 타야 했음. 하지만 기차표를 살 돈이 부족해서 무임 승차를 하게 됨.
- 이 씨 부부는 벌금을 감면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

## ■ 조언(Advice)

---

- ▶ 모든 NSW 주정부 발행 벌금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NSW 채권추심소(SDRO: State Debt Recovery Office)가 벌금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므로,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나 선처 요청은 벌금 납부기한 내 행해져야 함.
- ▶ 우선 벌금에 대한 재고 요청(request a review)을 SDRO의 홈페이지(<http://www.sdرو.nsw.gov.au/fines/pn/review.php>) 상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벌금 통지에 대한 재고요청서(Request for review of a penalty notice form)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SDRO에 우편으로 송부함(주소 State Debt Recovery Office PO Box 786, Strawberry Hills NSW 2012).
- ▶ 재고 요청에 대한 심리 결과,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벌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이 취소되거나 경고와 함께 지불 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음.
- ▶ 이 씨 부부의 경우, 기차표를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벌금부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정상참작을 하여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음.

- ▶ 벌금에 대한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SDRO 홈페이지 내 'fines self service' 메뉴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http://www.sdرو.nsw.gov.au/fines/pn/pay.php>)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1300 130 112). 또는, 분할납부신청을 위한 개인용 양식(payment by Instalment application—Individuals form)을 작성해서 우편(주소 State Debt Recovery Office PO Box A2571 Sydney South NSW 1234)이나 팩스로 송부하면 됨(팩스번호 02 6354 7302).
- ▶ 위 신청서를 보낼 때는 현재 벌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받은 센터링크 수입내역서(income statement)나, 급여명세서(payload), 혹은 계좌 입·출금 내역서(bank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 ▶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벌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work and development order'라는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무임금 노역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으며 무임금 노동이 가능한

승인된 스폰서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 ▶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SDRO의 Director에게 탄원서를 쓰는 것임. 이 편지에는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licence number), 벌금부과 처분 번호(enforcement order number)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적어야 함. 이 경우에도 벌금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입과 부동산 등 모든 소유물, 그리고 빚을 명시한 재정 상황 진술양식(statement of financial circumstances form)을 작성해야 함. 여기에는 수입내역서나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을 기술하는 서류들이 동봉 되어야 함.
- ▶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Director는 벌금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음. 단, 5년 내 또 어떤 벌금이라도 부과 받는다면 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 ▶ Director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가장 최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이며 먼저 제시한 방법들이 실패했을 경우 본 법률상담소에서 편지작성에 도움을 제공함.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 음주운전(Drink Driving)

### ■ 사안 개요

- 최 모 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셨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까지 직접 차를 운전함. 그러나 집에 오는 길에 이동식 무작위 음주운전단속(RBT, Random Breath Test) 대상이 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측정됨에 따라 최 씨는 지역경찰서에서 중간 수준의 음주운전(mid range PCA) 혐의로 기소됨.



---

## ■ 조언(Advice)

---

- ▶ 호주에서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에 해당됨. 위반자는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CAN: Court Attendance Notice)를 받게 되며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함. 변호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직접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추천함. 게다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 형량

---

- ▶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는 보통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처분의 정도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짐. 전과가 없는 경우 NSW 주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음.

위반 사항	최대 벌금	최대 징역 기간	최대 자동 면허정지기간	최소 자동 면허정지기간
NSW 주 음주운전 처분에 관한 법규 - 최근 5년 내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Novice range PCA 0.01 - 0.019 (L, P 자면허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1,100	해당 없음	6 months	3 months
Special range PCA 0.02 - 0.049 (L, P 자면허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1,100	해당 없음	6 months	3 months
Low range PCA 0.05 - 0.079	\$1,100	해당 없음	6 months	3 months
Mid range PCA 0.08 - 0.149	\$2,200	9 months	12 months	6 months
High range PCA 0.150 이상	\$3,300	18 months	3 years	12 months
마약 중독 상태의 운전(DUI)	\$2,200	9 months	12 months	6 months
음주측정 후 정밀 분석 거부	\$3,300	18 months	3 years	12 months
고의로 현중 알코올 농도 변경	\$3,300	18 months	3 years	12 months
최초 음주측정 거부	\$1,100	해당 없음	6 months	해당 없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당연히 형량은 높아지는데 법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위반 사항	최대 벌금	최대 징역 기간	최대 자동 면허정지기간	최소 자동 면허정지기간
NSW 주 음주운전 처분에 관한 법규 - 최근 5년 내, 2회 또는 그 이상의 중대 위반 행위				
Novice range PCA 0.01- 0.019 (L, P 자면허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2,200	해당 없음	12 months	6 months
Special range PCA 0.02- 0.049 (L, P 자면허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2,200	해당 없음	12 months	6 months
Low range PCA 0.05 - 0.079	\$2,200	해당 없음	12 months	6 months
Mid range PCA 0.08 - 0.149	\$3,300	12 months	3 years	12 months
High range PCA 0.150 이상	\$5,500	2 years	5 years	2 years
마약 중독 상태의 운전(DUI)	\$3,300	12 months	3 years	12 months
음주측정 후 정밀 분석 거부	\$5,500	2 years	5 years	2 years
고의로 현종 알코올 농도 변경	\$5,500	2 years	5 years	2 years
최초 음주측정 거부	\$1,100	해당 없음		

---

## ■ 최 씨는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

합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범법행위임. 도로 위 RBT에서 측정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거부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됨. 샘플 채취를 위한 호흡 검사를 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로 인정되지 않음.

---

## ■ 법원 출석

---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대부분의 피의자에게는 탄원서를 통해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음. 탄원서는 일찍 제출될수록 유리함.

상황에 따라 일부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판결에서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1.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거나(친구, 고용주,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서면 편지 제출) 교통/범죄 관련 위반 경혐이 전무한 경우.
2. 운전면허 박탈로 인해 극도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 (직업상 꼭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3. 운전자 교육이나 위반자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여

4. 긴급한 상황이나 돌발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위반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에 법원은 NSW 주 형사 선고 절차에 관한 법률(*Crimes (Sentencing Procedure) Act 1999*) 제10조에 의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음.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 임금체불(Unpaid Wages)

### ■ 사안 개요

- 조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체류 중인 23세 학생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Top Cleaner라는 청소업체와 일을 하게 됨.
- 조 씨는 쇼핑몰 등에서 1개월 간 세 번의 일요일 근무를 포함해 약 1,000시간 근무함.
- 조 씨는 처음 회사와 일을 시작할 때 사장인 김 모 씨로부터 시간당 \$15로 계산한 임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세금번호(Tax File Number)를 사장에게 제공하지 않음.
- 일을 시작한 지 4주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조 씨는 근무시간이 표시된 시간표 (timesheet)와 받기로 한 임금 액수를 제시하며 김 씨에게 임금 지불을 요청함.
- 회사는 처음 2주간 조 씨의 청소 상태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2주 분의 임금만 계산할 것이고, 그 중 1주 분의 급여는 A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한 보증금 (deposit)으로 지불을 유예하겠다고 하며 결국 1주 분의 임금만 지불함.

- 조 씨는 김 씨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끝냈고 자신이 근무한 4주간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함.



---

## ■ 조언(Advice)

---

-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에 포함된 세금과 연금을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 Office)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조 씨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신의 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과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이에 상관없이 조 씨는 체불 임금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 호주에서는 직업군별로 최저 임금 수준(minimum award

levels)이 정해져 있는데, 조 씨의 경우 청소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기준 “Cleaning Services Award 2010”을 적용함. 현재 청소 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인 캐주얼 직원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23.08이며(2016년 1월 기준, 레벨1의 청소 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일요일 등 공휴일 근무의 경우 최저 시급은 \$41.54임.

▶ 조 씨가 고용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1.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 시의 특별 시급을 포함하여 법으로 정해진 최저 수준의 임금 지급
2. 고용주 부담으로 조 씨의 임금에 포함된 세금과 연금을 납부
3. 미지급된 처음 2주간의 임금 지급
4. 보증금 명목으로 미지급된 1주간의 임금 지급. 보증금이 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

## ■ 절차(Procedure)

---

1. 일단 조 씨는 고용주인 Top Cleaner에게 조 씨가 고용주로부터 얻고자 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여기에는 만약 고용주인 김 씨가 14일 안에 조 씨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공정 고용 옴부즈맨(FWO: Fair Work Ombudsman)에 정식으로 분쟁해결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만약 고용주가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조 씨는 FWO 홈페이지 (<http://www.fairwork.gov.au/how-we-will-help/how-we-help-you/help-resolving-workplace-issues>)에서 노동분쟁양식 (Workplace Dispute form) (<http://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25/workplace-dispute-form.pdf.aspx>)을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음. 이때 조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급여명세서(pay slip), 근무시간표(time sheets),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contracts)나 일일 근무일지(daily records), 급여 지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records) 등이 포함됨. 이런 자료가 없을 경우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함께 일했다는 내용을 진술해주는 공술서(statutory declaration)를 제출할 수도 있음.

3. 작성된 양식은 증거 자료와 함께 다음 주소로 발송되어야 함 :

Fair Work Ombudsman

GPO Box 2567

Adelaide SA 5001

(서면 접수는 NSW주가 아닌 SA주 주소로 보내야 함)

4. FWO은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조 씨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줌.
5. FWO은 조 씨에게 다음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게 됨.
  - o Fair Work Ombudsman이 고용주와 접촉하였음.
  - o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조 씨와 고용주인 김 씨가 직접 출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발표할 날짜가 정해졌음.
6. FWO소속 담당자, 조 씨, 김 씨가 모두 출석한 이 회의는 양자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합의 사항은 문서화됨. 사인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며 한쪽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만약 분쟁이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조 씨는 지역 법원의 소액 클레임 부서(local court small claims division)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므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이 외에도(<http://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12/small-claims-guide.pdf.aspx>)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음.



---

## ■ 피고용자가 가지는 고용 문서에 대한 권리

---

- ▶ 2010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용인은 신규 고용인의 고용이 개시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48시간 이내 권장) Fair Work 정보 안내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 안내문에는 고용인의 권리, 최저 시급, 연월차, 고용 계약서 체결, 직장 내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보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고용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인이 이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으면 FWO에 신고할 수 있음.
  
- ▶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근무시간과 임금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기록보존의무는 피고용자가 합당한 임금 및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함. 피고용자는 다음의 자료와 정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사인된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는 급여일로부터 1일 내에 피고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피고용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매 해 회계연도 말인 6월 직후에 급여 지급 내역서 (“PAYG Payment Summary” 또는 “Group Certificate”라고도 함)를 제공함.

- 위의 문서들은 고용계약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위에 기술한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꼭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함.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사안 개요

- 김모 씨는 친구인 박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언쟁 끝에 박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
- 박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코뼈 골절과 심한 정도의 안면 타박상을 진단받음.
- 경찰은 김 씨를 박 씨에 대한 폭행상해 죄목으로 기소함.
- 박 씨는 김 씨에게 \$5,000을 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합의해 주겠다고 제안함.
- 김 씨는 박 씨의 합의 제안에 응해야 할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문의함.



---

## ■ 조언(Advice)

---

- ▶ 호주의 형사절차에서는 한국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 라는 개념이 없음.
- ▶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아님.
- ▶ 이 사안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위한 사진 촬영과 목격자 진술 청취가 행해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김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함.
- ▶ 박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박 씨는 김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박 씨는 치료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김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때 양측은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합의’ 할 수 있음. 반복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형

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 김 씨는 재판 시 그를 대리할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법률구조공단(Legal Aid)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찰 심문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변호사는 경찰이 수집한 사실들이 사건을 과장한 것은 아닌지 가해자나 사건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조사된 것인지 대신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음.
- ▶ 김 씨는 경찰에서 기소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지(guilty plea), 무죄를 주장할 지(not guilty plea) 결정하여야 하며, 형량을 줄여 경범죄로 기소해 주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협상도 고려할 수 있음.
- ▶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형량의 범위는 박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박 씨에게 상처를 입힌 폭행의 정도, 폭력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기타 양형상 참작할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김 씨에게 전과가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폭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역보다는 집행유예나 근신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음.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5

## 성폭행(Sexual Assault)

### ■ 사안 개요

- 강모 씨와 임 모 씨는 밤에 함께 술을 마셨고, 강 씨는 술에 취해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하나, 임 씨는 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주장함.
- 한국에 있는 임 씨의 어머니 황 모씨는 임 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강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을 요구함.
- 황 씨는 성추행으로 충격을 입은 딸 임 씨를 한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항공료 상당액(함께 귀국하려던 임 씨의 여동생 항공료까지 포함)을 강 씨에게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함.
- 강 씨는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만으로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 씨의 고소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지 문의함. 강 씨는 본 건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이 점에 대한 조연도 구함.

---

## ■ 조언(Advice)

---

- ▶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indecent assault)에 해당됨.
  
- ▶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내의 징역이나, 이 사례의 경우 강 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 만약 임 씨가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 하면, 강 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이며, 경찰의 수사에 응해야 함.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변호인은 강 씨에게 개별 신문조항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것을 조언할 것인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고, 묵비권을 포기하고 임 씨로 진술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을 할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 경찰 조사가 끝나면 강 씨는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 요지와 증거의 요지를 고지 받은 뒤 유죄를 인정할 지 여부를 질문 받게 됨.
  - 강 씨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곧바로 양형절차가 진행되고, 강 씨가 무죄 주장을 할 경우(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강 씨는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음.
  - 강 씨의 연수입이 법률구조공단(Legal Aid)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 해당되면, 강 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해 준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강 씨의 영어 구사 능력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음.
  
- ▶ 호주의 형사절차는 한국과는 달리 ‘형사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고소인)측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임 씨의 어머니 황 씨는 한국의 예전 관례를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 씨는 오히려 임 씨의 어머니 황 씨를 공갈죄(extortion)로 고소할 수 있음.

▶ 강 씨가 사건을 무마시킬 의도로 임 씨에게 \$4,000을 지불할 경우 이는 강 씨의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합의금 지급으로 강 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강 씨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며 강 씨는 임 씨가 경찰에 신고할 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신고가 행해질 경우 통상의 형사절차에 따른 절차를 수인할 수 밖에 없음.

※ 한편, 강 씨에 대한 강제추행기소(형사절차)와 강 씨가 아내로부터 맞게 될 이혼소송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로 진행됨.

---

## ■ 성폭행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

---

▶ 성폭행에는 강간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며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행위, 접촉, 키스를 모두 포함함.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성기 등을 노출(obscene exposure)하거나 자위행위 등 외설적인 행위(act of indecency)를 하는 것도 성폭행에 해당함.

▶ 성폭행은 다음의 상황에 성립됨.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행한 경우. ‘동의 없음’의 의미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알았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피해자가 동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을 갖고 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성교 시작 후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교 행위를 진행한 경우도 해당함.
-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 또는 제3자와 강제로 성교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때 성교 행위를 하거나 당한 사람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음.

▶ **성교 행위란** 남성의 성기를 전체 혹은 일부를 입이나 항문, 여성의 질에 접촉 또는 삽입하는 행위를 말함. 뿐만 아니라 신체의 부분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 또는 삽입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혀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됨. 손가락이나 성기의 끝부분이 살짝 닿았거나 아주 짧은

시간이었던더라도 성폭행에 해당함. 정액 사출의 유무는 상관없음.

▶ 동의란 개인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합의를 말함. 법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음.

- 신체적으로 협박 또는 강요를 당했거나 다른 누군가가 위해 당할 것이 두려워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상태였을 때(예를 들어, 자동차나 집 안에 감금 등)
-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때(잠들었거나 무의식 중이었거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경우)
-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예를 들어 정신 지체/박약자, 심신 상실자, 미성년자의 경우 등)
-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거나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한다고 착각했을 때
- 이 행위가 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경우

▶ 동의를 없는 성교 행위는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성폭행으로 간주됨.

---

##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

---

- ▶ 만약 성범죄를 당한다면 긴급전화 ☎ 000이나 지역경찰서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함.
  - 경찰에 연락하여 성범죄를 신고함으로써 즉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여 입건할 수 있으며 보석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음. 보석이 허가된 경우라도 보석조건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 또한 접근금지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의해 발부된 명령임. AVO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경찰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음. 상대방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도 AVO를 신청할 수 있음.
  
- ▶ 피해자를 위한 전화(Victims Access Line, ☎ 1800 633 063)에 연락하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가의 상담, 소견서 발급, 의료 서비스, 재정보조 등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음.
  - 만약 최근에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경우에 따라 범죄

입증을 위한 증거물(속옷 등)을 수집할 수도 있음.

- ▶ 각 지역에 위치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가까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SAS: Sexual Assault Service)에서 주소를 찾을 수 있음. 이 서비스들은 무료로 제공되며 절대 비밀을 보장함.

---

## ■ 성폭행 신고 절차

---

- ▶ 성폭행이 일어난 직후 신고할 경우
  - 가능한 빨리 경찰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
  - 경찰은 피해자를 경찰서 내부에 외부접근이 차단된 방으로 안내하고 상급자가 배치되어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함.
  -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담당 형사가 피해자를 돕게 됨.
  - 경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해자 옆에서 도움을 줄 인력을 제공함.
  -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성폭력 전문 담당 의사가 배치되어 증거를 수집함. 증거는 성폭행이 일어난 후 72시간 내에 수집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1주일 후까지도 가능함. 가해자가 기소되면 수집된 증거가 사용될 수 있음.
  - 가능한 씻거나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음.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넣어 경찰에 제출하여야 함.
  - 사건 발생 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위해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함. 샘플이 일찍 채취될수록 약물이나 알코올 성분이 발견될 확률이 높음. 소변을 이미 누었다면 버리지 말고 경찰에 제출해야 함.
  - 즉시 경찰서로 간다면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야 함.
  -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 특정 성별(남성이나 여성)의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힐 수 있음
    - ◆ 경찰서로 갈 때 동행할 지원 인력을 요청할 수 있음
    -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 성폭행이 일어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 증거수집을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SAS와 연락이 될 때까지 씻거나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음. 진찰한 의사의 소견은 경찰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 옷을 벗어서 세탁하지 않은 채로 종이봉투에 담아야 함.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부서는 성폭력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를 배치시켜서 후에 경찰 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게 됨(피해자의 동의 하에만 사용함). 수집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성폭행을 당한 경우 Victims Access Line이나 NSW Rape Crisis Centre, 또는 지역 내 SAS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6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 ■ 사안 개요

- 황 모 씨의 남편 노 모 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황 씨를 폭행해 왔고, 폭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황 씨는 이제 자신 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함.
- 황 씨는 자신이 집을 나오더라도 남편이 곧 자신을 찾아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함.



---

## ■ 조언(Advice)

---

- ▶ 가정폭력은 중대범죄이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해자는 폭력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됨.
- ▶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긴급전화 ☎ 000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에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함.
- ▶ NSW주에는 가정폭력 상담전화(Domestic Violence Line ☎ 1800 656 463)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기관이 여러 곳 있음.
- ▶ 위 사례에서 황 씨는 남편 노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신청을 하면 됨.
  - ※ AVO는 피해자를 폭행(violence), 협박(threat), 괴롭힘(harassment)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 피해자의 신청이나 피해자를 대신한 경찰의 신청으로 행해질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그 보호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 ▶ 접근금지명령은 유형에 따라 가족 구성원 접근금지명령

(ADVO: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와 제삼자 접근금지명령(APVO: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2가지 종류가 있음.

### 1. 가족 구성원 접근금지명령(ADVO)

- 전·현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 친척, 동일한 주거지 내에 거주하는 간병인 등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있거나 가정내 사람으로부터 행해지는 폭력, 위협,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임.

### 2. 제삼자 접근금지명령(APVO)

-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없거나 가정 외에서의 사람으로부터 행해지는 폭력, 위협,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임.

▶ 피해자는 지방법원(Local Court)에 직접 AVO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AVO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음.

- 경찰에 AVO 신청을 요청할 때 피해자는 경찰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폭력 경험과 피해자가 우려하는 위해에 대해 경찰에 진술해야 함.
- 경찰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스토킹 등의 범죄가 있었다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법원에

AVO 신청을 해야 함.

- ▶ 일반적으로 긴급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법원으로부터 임시 AVO가 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AVO가 유효함. 피해자는 AVO를 다루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입은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는 항상 경찰관 동행하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
  
- ▶ AVO는 대상자에 대해 특정 조건을 부과하여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데, 가해자(offender)에게 부과되는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음
  - (피해자에 대해) 폭행, 괴롭힘, 협박, 스토킹, 위협을 하지 말 것
  -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나 근무지 주변에 들어가거나 머무르지 말 것
  -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 것
  - 그 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조건들도 부과될 수 있음

- ▶ 법원과 경찰은 법원이 행한 AVO와 부과된 조건을 기록해 둬
- ▶ 만약, 가해자(offender)가 AVO가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위반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를 AVO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
- ▶ AVO 명령이 내려져 있는 기간 동안, AVO의 조건(들)을 위반 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아 기소될 수 있음.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최고 벌금 \$5,500, 최고 징역 2년형이 적용될 수 있음.
- ▶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지만, 종종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할 수 있음. 한국인의 정서상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호주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어 질 수 있으니 경찰에게 진술을 할 때 유의해야 함. 예를 들어 “죽여 버린다” 라고 한 말 조차 협박죄가 성립이 되어 기소가 되고, AVO가 신청될 수 있음. 호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경찰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는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피의자는 기소가 되고 AVO 신청이 될 수 있음.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사안 개요

- 송 모 씨는 본인을 임차인으로 소개한 한국 여성 유 모 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3개월간 4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share 형태로 거주하였음. 송 씨는 그 집의 주인으로 알고 있던 탁 모씨가 사실은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고 더욱이 갑자기 잠적했다는 말을 듣고 share 보증금(deposit)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share를 모집했던 유 씨에게 문의하자 유 씨는 실제 집주인인 잭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송 씨를 안심시킴.
- 송 씨가 이사를 한 뒤 유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유 씨는 원주인인 잭슨 씨와 이야기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송 씨가 잭슨 씨에게 전화했을 때 잭슨 씨는 나중에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답변함.
- 몇 주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자 송 씨는 잭슨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잭슨 씨는 태도를 바꾸어 송 씨의 보증금은 실제 주인 행세를 한 탁 씨가 가지고 도주하였고, 자신은 송 씨의 보증금에 대해 어떠한 지를 책임도 없다고 답변함.

- 그 사이 원 임차인 유 씨는 잭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한 국으로 귀국하였고, 송 씨를 포함한 4명의 share 공동 전전차인들은 각자의 보증금 \$360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
- 송 씨를 비롯한 share 전전차인들은 유 씨와 구두로 share 계약을 체결하고, 유 씨에게 현금으로 rent 비용을 지불하여 왔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나 유 씨에게 share 비용을 지불해 온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임.
- 송 씨가 유 씨에게 지불한 rent 비용이 실제로 원 소유주 잭슨 씨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송 씨는 원 소유주 잭슨 씨의 실제 이름과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태임.
- 송 씨는 share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

## ■ 조언(Advice)

---

- ▶ 소유주(잭슨 씨) - 임차인(전대인) 탁 씨) - 전차인(전전대인) 유 씨 - 공동전전차인(share) 송 씨
  
- ▶ 전대차(또는 전전대차) 계약의 전대인(즉 임차인)은 실제 집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체결한 전대차(또는 전전대차) 계약의 경우 소유주는 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없음.
  - ※ 한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 없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임대인(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움.
  
- ▶ 이 사안의 경우 송 씨는 유 씨와 구두로 전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 소유주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송 씨는 집 소유주 잭슨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 송 씨는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한 유 씨 또는 소유주 행세를

한 탁 씨를 상대로 NSW Civil & Administrative Tribunal의 Consumer & Commercial Division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무료 통역 서비스 신청 가능
- 전대인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꼭 알아야 함

▶ 또한 지방법원을 통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청구액 \$10,000미만일 경우 소액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360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얻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임.

※ 워홀러들이 많이 이용하는 room share의 법적 성격은 한국법상 공동전대차에 해당되나, 호주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share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 소유자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또한, share의 경우 정식 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rent 비용도 현금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전대차 보증금 최초 지급시 이에 대한 수령 (payment receipt - 지불 일시와 금액을 명시하고 전대인의 서명을 받을 것)을 작성하여 교부받고(가능하면 전대인의 영문이름과 주소 포함), rent 비용도 최소 단위(1주 또는 2주분)로 지급하는 것을 추천함.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8

## 산업재해(Worker's Compensation)

### ■ 사안 개요

- 문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5개월 전 퀸즈랜드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 수확 작업 중 칼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음.
- 문 씨는 병원에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와 2일간의 일실 수익에 대해서는 WorkCover에서 보상을 받음.
- 문 씨는 비록 치료비와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WorkCover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작업 도중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농장주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문의함.



---

## ■ 조언(Advice)

---

▶ 일반적으로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난 경우 곧바로 고용주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함. 이유는 법률상 고용주는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준수해야 보험회사에 대한 excess 비용(보험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수수료)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임.
2. 상황에 따라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고용주의 인적 사항, 담당 의사의 인적 사항 및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사고 후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산업재해보상 청구용 의사 진단서(WorkCover medical certificate) 작성을 요청하고, 위 진단서를 통해 의사가 보험회사에 사고 당사자의 medical information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4. 산업재해보상 청구용 의사 진단서를 진료비나 기타 의료비 영수증과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하면서 고용주에게 산재보상 신청서 양식(WorkCover compensation claim form)

을 요청한 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NSW 의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5. 고용주의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직장 복귀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준비하는 부상회복에 필요한 계획(injury management plan)을 따라야 함.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6. 중대 사고(중태, 혼수상태, 심한 화상, 신체 일부 절단 또는 작업용 기계에 의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 131 050으로 전화하여 WorkCover에 바로 통보해야 함.

▶ 만약, 고용주가 산업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WorkCover Claims Branch를 통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기관인 WorkCover에서 직접 상황 조사를 한 뒤 보험회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후유 장애 등) 사고 후 6개

월이 지난 이후에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 산업재해 보상 신청 후 근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산업재해 보상 신청 후(사고 발생 후) 첫 13주 동안은 이전 지급받던 통상 임금의 95%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사고 후 14주 ~ 130주(약 2년)까지는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사고 후 131주 ~ 260주까지도 근로 능력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사고로 인한 장애가 몸 전체의 20%가 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은 산업재해 신청 후 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 병원비, 약값 또는 병원을 왕래하는 데 소요된 교통비 등 기타 관련 비용(medical and related expenses)은 보상 기간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까지 청구 가능함.

▶ 근로능력 회복 여부의 판단은 통상 고용주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과 상담에 의해 결정되며, 위와 같은

결정은 산업재해 보상 신청 후 130주 이내에 행해짐.

- 지정 의사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이전의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일 또는 다른 직장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근로를 재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중단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근로 재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심의 위원회 (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기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WorkCover에 ☎ 131050으로 문의할 수 있고, 통역 서비스는 월~금 08:30~17:00까지 이용 가능함.

▶ WorkCover의 한국어로 된 안내책자

[http://www.workcover.nsw.gov.au/\\_\\_\\_data/assets/pdf\\_file/0018/16641/info\\_for\\_injured\\_workers\\_korean\\_2864.pdf](http://www.workcover.nsw.gov.au/___data/assets/pdf_file/0018/16641/info_for_injured_workers_korean_2864.pdf)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9

## 교통사고(Motor Vehicle Accident)

### ■ 사안 개요

- 신모 씨는 학생 비자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여성임.
-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빠져 나오던 중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킴.
- 사고는 신 씨의 과실이었으며 신 씨의 차량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종합 보험 (Comprehensive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신 씨는 자신에게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문의함.



---

## ■ 조언(Advice)

---

- ▶ NSW내 모든 차량 소유주는 대인보험(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소(RMS)에 차량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신 씨의 차량은 의무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이 보험에 의해 배상받게 됨.
  
- ▶ 대물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 누구의 과실이나에 상관없이 피해 입은 차량과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함.
  - 대물보험(Third party property insurance) : 보통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에 입힌 손해만 배상함.
  
- ▶ 신 씨가 상대 차량 소유주와 직접 연락하여 처리해야 할 지, 아니면 상대 차량 보험사에 맡겨야 할 지는 상대 차량 소유주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와 그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 신 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녀는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과실이 없는 쪽의 차량이 사고 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정도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 변제의 범위임.
  
- ▶ 일반적인 원칙으로 말할 때, 신 씨는 다음의 책임이 있음.
  - 수리비용과 차량의 시세 중에서 적은 금액에 견인비용 및 기타 합당한 비용 (차량 대여비용 또는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손실)을 더한 것.
  
- ▶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연식/제조사/모델/차량 상태/지역 내 자동차 수리점 유무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당한 최소의 금액으로 산정됨. 신 씨가 상대 차량 운전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신 씨는 독촉장(letter of demand)을 받게 됨
  - 소장(Statement of Claim) /소환장(summons)을 받게 될 수도 있음
  - 상대 차량 소유주나 그의 보험사가 보낸 소장/소환장에 대해 어떠한 변론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판결을 받게 됨 (통상 28일 후)

-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신 씨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함

▶ 신 씨가 독촉장을 받고 지불대금에 동의 한다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음.

- 요구된 금액을 지불함.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금액을 협상할 수 있음
- 경제적 이유로 일시불 지급이 어려우면 분할납부 할 것을 요구함
- 금액의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금액 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예를 들어 정비소의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지정하는 다른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 볼 것을 요구
- 금액 산정이나 사고 책임에 대해 법정에서 다툼(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음)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조언(Advice)

1. 개인적인 경로로 판매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딜러 외의 판매자에게 구입)

- ▶ 정식 등록된 자동차 딜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 ▶ 우선 구매자는 RMS 웹사이트 상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의무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폐차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무료 검색 가능).
- ▶ 추가로 개인 자산/증권 등기소(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Register)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유료 검색만 가능).
- ▶ 등록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번호와 엔진번호

호를 알아야 함.

- ▶ 개인적인 경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비교적 많지 않음. 따라서 구입 전에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확실히 점검하는 것을 추천함.

## 2.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 ▶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딜러는 다음 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숙려 기간(cooling off period)에 대한 안내
  -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deposit) 금액
  - 법으로 정한 보증(warranty)에 대한 안내구매자가 일단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 딜러는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숙려 기간에 대한 공지
  -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

- ▶ 덧붙여 구매자는 차량에 대한 안전확인서(safety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 숙려 기간 안에 구매자는 아무런 페널티없이 차량 구매에 대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매 시 숙려 기간은 근무일 기준 1일임.
- ▶ 구매자가 숙려 기간이 지난 후 구매 계약을 취소하면, 딜러는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 3.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
- 중고차 구입시 받은 안전확인서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자나 정비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 차량 구입시 딜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중고차 판매 딜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1

## 직업 알선 수수료

### ■ 조언(Advice)

- ▶ NSW주에서는 직업 (고용)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위반시 최대 \$550의 벌금형에 처함.
- ▶ 또는 직업 알선 업체는 최초 직업 소개 시 직업 구인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추후 구인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함. 위반 시 기업의 경우 \$1,100, 개인사업자의 경우 \$220 벌금을 부과받음.
- ▶ 직업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불한 경우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NSW)에 고발할 수 있음.

**[면책 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내 모든 한인들을 위한

# 법률 상담 서비스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호주한인변호사회는

호주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위하여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서비스는 아래 분야로 한정되며, 이민, 이혼 분야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상담(one-off advice)
시 간	매달 첫째 화요일 18:15 ~ 21:15(예약 필수)
장 소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
상담분야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Credit & Debt), 경미한 형사 사건(Minor Criminal Matters), 벌금(Fines), 자동차 사고(Motor Vehicle Accidents), 고용법(Employment), 소비자 불만(Consumer Complaints), 차별(Discrimination),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문제(Family Law involving Children), 범죄 피해자 보상(Victim's Compensation)
예 약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Step1. 상담예약 요청 연락처(Mobile 등)와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음성메세지(02 8078 4608)에 설명  Step2. 상담시간 통보 예약 요청을 받은 다음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사이에 상담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
문 의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알기 쉬운 호주 생활 법률 안내



“호주 워홀러, 유학생, 한인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 사례집”